

[별표 4]

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 
표시기준(제6조 관련)

1. 표지도표



2. 표시방법

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는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, 포장 재질,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, 디자인은 1호와 같아야 한다.

3. 표지도표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옆에는 “www.tfood.go.kr”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(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)를 입력하시면 식품(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등)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” 라는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예시)

 <p>“www.tfood.go.kr”에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	 <p>“www.tfood.go.kr”에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식품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
--	--

\* 제품에 따라 식품(건강기능식품)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식품,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등을 선택 표시